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3. 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6년 2월 18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6년 2월 18일 회부

라. 상정일자: 제19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6. 3. 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갑수)

가. 제안이유

- 신길제11구역 재개발에 따른 부지 내 래미안프레비뉴 아파트가 12월 말 준공됨에 따라 사업 부지 내 신길5동 일부지역이 신길3동으로 편입되어 동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당 산2동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상위법령 인용조문 수정 및 '동주민센터' 약칭 삭제 (안 제1조)
- '동주민센터' 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로 풀어쓰기 (안 제2조)
- 동주민센터 소재지 및 관할구역 변경 (안 제2조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제6조에 따라 영등포구 관내 동주민센터의 구역과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신길동 329-94 일대에 위치한 신길11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되어 공동주택 (래미안프레비뉴 아파트)이 2015년 12월말 준공됨에 따라, 주민 생활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에 일부 포함된 신길5동 주민센터 관할 구역을 신길3동 주민센터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여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임.
- 또한, 노후 되고 협소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였던 당산2동 주민센터 청사를 폐쇄하고, 공공 기부채납 토지에 어린이집, 체력단련실, 작은도서관, 다목적강당 등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고 2015.11.30.부터 개청 하였는바, 이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임.
- 그 외 상위법령 인용조문 수정, ‘동주민센터’ 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로 하여 명칭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21 호
----------	---------

제출연월일 : 2016.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신길제11구역 재개발에 따른 부지내 래미안프레비뉴 아파트가 12월말 준공됨에 따라 사업부지내 신길5동 일부지역이 신길3동으로 편입되어 동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또 당산2동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동주민센터(이하 “동주민센터”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로 한다.

나. 제2조 중 “동주민센터”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로 한다.

다. 별표의 “동주민센터 명칭”란 중 “당산제2동”과 “신길제5동”을 아래와 같이 한다.

○ [별표] 신길5동 관할구역 변경

-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이 신길3동과 신길5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관할구역의 변경(신길5동의 일부 → 신길3동 편입)
 -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내 래미안프레비뉴 아파트가 '15. 12월말로 준공됨에 따라 아파트생활권과 동행정구역을 일치하여 주민의 편의 도모
- ※ 신길3동 관할구역은 조례상 변동사항이 없어 개정불요

○ [별표] 당산2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사항

(1) 규제심사 : 대상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6. 1. 14 ~ 2. 3, 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주민센터(이하 “동주민센터” 라 한다)”를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로 한다.

제2조 중 “동주민센터”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로 한다.

별표의 “동주민센터 명칭”란 중 “당산제2동”과 “신길제5동”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동주민센터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구분	동주민센터 명칭	동주민센터 소재지	법 정 등 관 할	
			전지역관할	일부지역관할
영등포구	당산제2동	당산로41가길 7 (당산동4가 80-5,86-3)	당산동4가 당산동5가 당산동6가 당산동	
	신길제5동	도림로 149-3 (신길동 422)		신길동 253번지213호를 기점으로 신길로에 연하는 신길동440번지 57호에서 이면도로를 따라 신길동 410번지141호에서 북쪽으로 신길동405번지37호에서 가마산로48길 이면도로를 따라 가마산로 신길동 379번지5호,가마산로 신길동355번지545호에서 도림로 신길동 342번지134호의 이면도로를 따라, 신길동 336번지 239호 이면도로에서 기점까지 이르는 지역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주민센터(이하 “동주민센터” 라 한다)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 ----- -----.</p> <p>제2조(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p>

현 행

(별표)

동주민센터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구분	동주민센터 명칭	동주민센터 소재지	법 정 동 관 할	
			전지역관할	일부지역관할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생략)	(생략)	(생략)
	영등포동	(생략)	(생략)	(생략)
	여의동	(생략)	(생략)	(생략)
	당산제1동	(생략)	(생략)	(생략)
	당산제2동	당산길 16 (당산동6가 305-4)	(생략)	(생략)
	도림동	(생략)	(생략)	(생략)
	문래동	(생략)	(생략)	(생략)
	양평제1동	(생략)	(생략)	(생략)
	양평제2동	(생략)	(생략)	(생략)
	신길제1동	(생략)	(생략)	(생략)
	신길제3동	(생략)	(생략)	(생략)
	신길제4동	(생략)	(생략)	(생략)
	신길제5동	도림로 149-3 (신길동 422)		신길동337번지390호를 기점으로 신길로에 연하는 신길동 440번지 57호에서 이면도로를 따라 신길동 410번지141호에서 북쪽으로 신길동405번지37호, 이면도로를 따라 신길동 379번지5호,가마산길 신길동355번지545호 도림로 신길동342번지134호, 이면도로를 따라 신길동 329번지29호 이면도로에서 기점까지 이르는 지역
	신길제6동	(생략)	(생략)	(생략)
	신길제7동	(생략)	(생략)	(생략)
	대림제1동	(생략)	(생략)	(생략)
대림제2동	(생략)	(생략)	(생략)	
대림제3동	(생략)	(생략)	(생략)	

개 정 안

(별표)

동주민센터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구분	동주민센터 명칭	동주민센터 소재지	법 정 동 관 할	
			전지역관할	일부지역관할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영등포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여의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당산제1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당산제2동	당산로41가 길 7 (당산동4가 80-5,86-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도림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문래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양평제1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양평제2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길제1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길제3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길제4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길제5동	도림로 149-3 (신길동 422)		신길동 253번지213호를 기점으로 신길로에 연하는 신길동 440번지 57호에서 이면도로를 따라 신길동 410번지141호에서 북쪽으로 신길동405번지37호에서 가마산로48길 이면도로를 따라 가마산로 신길동 379번지5호,가마산로 신길동355번지545호에서 도림로 신길동342번지134호의 이면도로를 따라, 신길동 336번지239호 이면도로에서 기점까지 이르는 지역
	신길제6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길제7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대림제1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대림제2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대림제3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